

2022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6. 2.

고용노동부 장관

1. 지정 신청 및 심사

○ 신청대상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'진흥원') 주관 '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'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(이하 '창업성공팀'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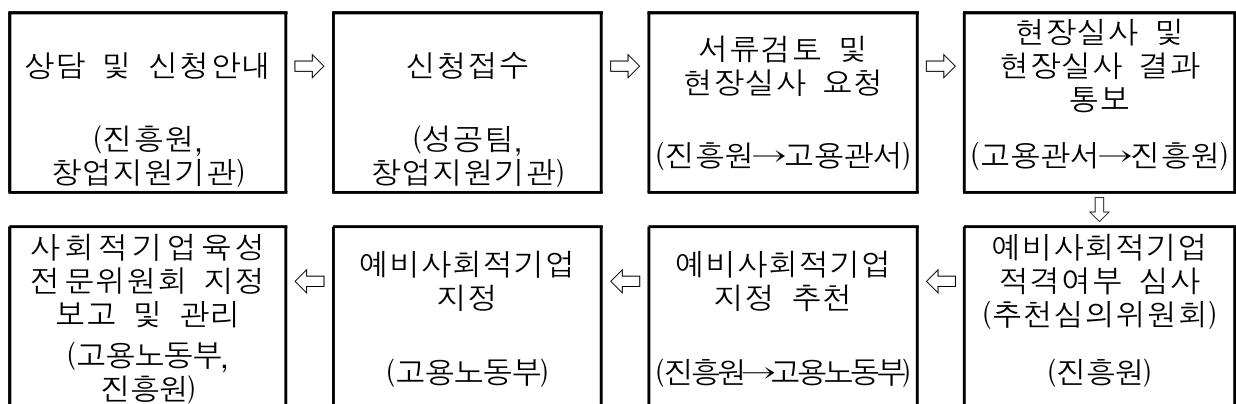
- 단, '22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

※ 붙임의 창업육성기관 추천서 참조

○ 지정신청: 1차(6월말까지), 2차('22.10월 중 별도 공지*)

○ 지정심사: 8월, 12월 예정 (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)

○ 지정절차:



2.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

* 각 요건별 세부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준용

□ (지정방향)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·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 확산하기 위해 고용 노동에 특화된 특색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

□ 세부 지정요건

① 조직형태

-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*

*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,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
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
② 사회적목적 실현: 기타(창의·혁신)형

- 조직의 주된 목적이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

* 2022년도 2차 지정공모 시부터 지정유형을 확대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함

③ 영업활동

○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(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)

- 단,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

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 및 청산 시 기부 규정(정관 등에 기재)

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⑥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교육 이수

3. 제출서류

- 제출서류
 -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서
 -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 -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해당기업)
 - 유급근로자명부(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,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)
 - 사업자등록증
 - 신청직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해당기업)
 - 정관·규약(공증받은 자료에 한함)
 - 창업지원기관 추천서
 -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- * 「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」 상 구비서류 확인

4. 접수처 및 방법

- 접수처 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 - 접수방법: 서식별, 구비서류별로 PDF로(200dpi) 저장하여 통합정보 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
 - * 세부 접수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
- 신청기간 : 공고일~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

5. 문의처

-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
 - ☎ 031-697-7726, 7723, 7729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연락처(1800-2012) 붙임 참고
 - * 진흥원 홈페이지(www.socialenterprise.or.kr)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참고

<붙임 1> 통합지원기관 현황

2022년도 사회적기업 · 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

권역	기관명	주소	전화번호	이메일
강원	(사)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	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,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(우산동)	033-749-3942 033-749-3920	gwse0524@naver.com
경기	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, 상가동 2층 (망포동, 수원영통행복주택)	070-4763-0130	pns@pns.or.kr
경남	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, 3층 (명서동, 일웅빌딩)	055-266-7970	moducoop@moducoop.com
경북	(사)지역과소셜비즈	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, 본부동 3층 301호(삼풍동, 경북테크노파크)	053-956-5002	se@sebiz.or.kr
광주	사회적협동조합 살림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(치평동)	062-383-1136	ses@socialcenter.kr
대구	(사)커뮤니티와경제	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, 5층(동산동, 유창빌딩)	053-956-5001	ucsr@hanmail.net
대전 세종	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	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, 3층(선화동)	042-223-9914	c-cmail@hanmail.net
		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-5(마드리드A) 509호	044-867-9954	
부산	(사)사회적기업연구원	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(구서동, 현대빌딩2층)	051-517-0266	info@rise.or.kr
서울	(사)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-39, 200호(충정로2가, 본관)	02-365-0330	joyfulunion@naver.com
울산	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	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45, 10층(달동, 울산극동방송)	052-267-6176	ulsan@sescoop.or.kr
인천	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, 6층(주안동, 계림빌딩)	032-446-9492	inseca@daum.net
전남	(사)전라남도농촌종합지원센터	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72, 더클래스빌딩 B동 433호	061-335-0125	jrsc00@naver.com
전북	(사)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	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, 6층(팔복동1가, 경제통상진흥원)	063-213-2244	jbse2019@gmail.com
제주	(사)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, 1층(이도일동, 고용복지플러스센터)	064-726-4843	jejusen2015@hanmail.net
충남	(사)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	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86번길 27-3,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,4층	041-415-2012	cnse1212@gmail.com
충북	(사)사람과경제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, 2층(송절동)	043-222-9001	cbse@hanmail.net

<붙임2> 신청서식

<별지 제1호서식>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60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서

① 신청기관명 (사업자등록 기준)			
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명 (참여 년도)		② 대 표 자	
④ 연락처(휴대폰)	☎ (FAX.)	⑤사업자등록번호	
⑥ 소 재 지			
⑦ 조 직 형 태	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민법상 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식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한회사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자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익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영리민간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비자생활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<input type="checkbox"/> 영농·영어조합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농업·어업회사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법인, 비영리단체 2. 법령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단체 등		
⑧ 지정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㉗[], ㉘[], ㉙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타(창의·혁신)형		
⑨ 주된사업내용			
⑩ 업종		⑪ 소속위탁기관	
⑫ 사업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·예술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산림 보전 및 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사 간병 <input type="checkbox"/>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용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제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
「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」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기업 대표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

구비서류	1.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, 사업자등록증,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필요 시) 3.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 (해당 기업만) - 1)유급근로자명부, 2)4대보험가입자 명부, 3)근로자 근로계약서, 4)임금대장 4.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해당 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) 5. 공증받은 정관·규약 6.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7.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. 대표자 이력서 9.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
------	---

❖ 작성방법

① 신청기관명

- 법인(단체)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

* 예시: 주식회사 홍길동 (사오정)

② 대표자명
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,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

③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창업팀 명(참여년도)

-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

④ 연락처

-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, “()”안에 대표자(또는 담당자)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

⑤ 사업자등록번호

-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

⑥ 소재지
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

⑦ 조직형태

-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(중복선택 불가)

⑧ 지정 유형

- “기타(창의.혁신)형”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(타 유형 선택 불가)

⑨ 유급근로자수(해당기업)

- 추천신청시점의 유급근로자수(고용보험가입자 기준)를 기재

⑩ 주된 사업내용

-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(소셜미션)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**간략히** 기재

⑪ 업종

- 사업자등록증 상 ‘업태’를 기재

⑫ 소속 위탁운영기관

-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

⑬ 사업분야

-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(중복선택 불가)

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

◆ 기업개요

기업명 (기관명)		대표자	
소재지			
연혁			

◆ 인증요건 충족계획

사회적목적유형 신청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서비스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자리 제공형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사회 공헌형(㉠[], ㉡[], ㉢[]) <input type="checkbox"/> 혼합형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타(창의·혁신)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
조직형태	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-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
근로자 고용계획	유급근로자 고용 계획(정규직 00명 등)
의사결정구조	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- 이사회(운영위원회) 등 운영 계획
정규약관	정관(규약) 제·개정 계획 - 의사결정구조,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(개정) 계획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1. 사업 목적 (사업의 필요성)	1-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(소셜미션) :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(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) 1-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(사업필요성)
2. 사업 내용 (영업수입 확보방안)	2-1 구체적 사업내용 2-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-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-4 핵심고객 및 팔로 확보 방안 2-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

◆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(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)

<p>3. 사업 역량</p>	<p>3-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: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</p> <p>3-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: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</p> <p>3-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: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: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</p>
<p>4. 사업 목표</p>	<p>4-1 연차별 매출규모</p> <p>4-2 고용창출 계획</p> <p>4-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</p> <p>4-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</p>

◆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<p>1년차</p>	<p>(예시) - 사업장(사업시설) 확보 및 인력 확충</p>
<p>2년차</p>	<p>(예시) -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- 사업장(지점) 추가 확보 -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</p>
<p>3년차</p>	<p>(예시) -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</p>

◆ 기타 추진계획

연계기업,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

*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(필요시 별지작성)

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'대표자'가 직접 작성
-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될 수 있음

1	<p>'근로기준법', '최저임금법'을 준수하고 있나요</p> <p>예시) ·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· 매월 임금 정기 지급 ·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· 주휴수당(일명 주차수당) 지급 ·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(2022년 시간급 9,160원, 월 209시간 기준 1,914,440원) ·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2	<p>'직업안정법' '파견법'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</p> <p>예시) ·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· 4대보험 체납 없음 ·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· 노동청,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·접수된 사항 없음 ·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3	<p>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</p> <p>예시) ·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·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</p>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4	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6	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(지정)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7	2020년, 2021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8	마을기업,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. *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노동관계법령의 범위

1. 「근로기준법」
2. 「최저임금법」
3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4. 「임금채권보장법」
5. 「산업안전보건법」
6.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7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
8.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9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
10. 「근로복지기본법」
11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
12. 「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3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
14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
15.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16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: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, 사업자등록상태조회, 예비 사회적기업 실적·성과 평가 등에 활용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휴대폰)
-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- 개인정보의 제공: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: (서명 또는 인)

성명	
주민등록번호	-

본 임

[창업지원기관 작성]

창업지원기관 추천서 (제출용)

◆ 추천 대상기관 개요

① 신청기관명 (창업팀명)		② 대 표 자	
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여연도		④ 최종평가 결과	
⑤ 소 재 지			
⑥ 사회적 목적			
⑦ 사업내용			

◆ 확인사항

⑧ 조직형태	⑧-1 조직형태	
	⑧-2 구비서류	
⑨ 유급근로자 고용 (해당기업만)	⑨-1 근로자수	
	⑨-2 구비서류	
⑩ 영업활동	⑩-1 사업개시일	
	⑩-2 구비서류	
⑪ 정관	⑪-1 정관여부	
	⑪-2 구비서류	
⑫ 배분가능이윤의 2/3 재투자	⑫-1 재투자여부	
	⑫-2 구비서류	
⑬ 지정계획의 타당성	⑬-1 타당성	
	⑬-2 구비서류	

고용노동형 지정지원계획 수립일 : 20 년 월 일

⑭ 창업지원기관 의견
(고용노동형 특화 사업모델
여부, 사회적기업가 정신
활동사항, 영업활동에
관한 사항 등)

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기관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의 추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창업지원기관명:

대 표 자:

(직인)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